

상해사망 · 후유장해 : 최고 50,000,000원

국내체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
(단,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해)

질병사망 : 최고 10,000,000원**상해 또는 질병 입원의료비 : 최고 10,000,000원**

국내체류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

‘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’ 과 ‘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제외)’ 부분의 합계액 중 **80% 해당액 보상**
(다만, 20%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)

상해 또는 질병 통원(외래)의료비 : 최고 250,000 원

국내체류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,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(계약일로부터 연간 방문 180회 한도)

■ **본인공제금액 : 병원등급별 공제금액과 보상대당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을 공제**

■ **병원등급별 공제금액 : 의원 1만원, 병원 1만5천원, 종합전문병원 2만원**

상해 또는 질병 처방의료비 : 최고 50,000 원

국내체류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(계약일로부터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)

■ **본인공제금액 : 기본공제금액과 보상대당 의료비의 20% 중 큰 금액을 공제**

■ **기본공제금액 : 8천원**

일상생활배상책임 : 최고 10,000,000원

피보험자가 일상생활(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,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.) 중에 따른 우연한 사고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

■ **본인공제금액 : 2만원**

해외치료입원의료비 : 최고 30,000,000원

피보험자가 국내에서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

외국인특별비용 : 최고 30,000,000원

-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해이송비용 (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 운임, 수행의사, 간호사 호송비) 등을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
- 탑승한 항공기·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, 등반 중 조난된 경우의 수색구조비용을 보상
-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병원 입원치료를 요할 경우 구원자의 교통비 (2명분), 숙박비 (2명분/14일한도내) 보상

♣ **보험계약 전 과거에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.**